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7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1월 3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장 퀸위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 방식을 상임 위원장이 교섭단체에 속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상임위원장 퀸위 시 직무대리 지정 방식에 대한 흐름을 보완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장 퀸위 시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던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(안 제43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또는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부위원장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. 다만,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<u>경우에는</u>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43조(부위원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<u>경우 또는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-----.</u></p>